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니언시 지위 인정

법무법인 올촌(미국) 변호사 | 이석준

1. 문제 제기

경쟁법상 리니언시(Leniency)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¹⁾가 그러한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쟁당국에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다.²⁾ 리니언시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EU, 독일 등 거의 모든 경쟁법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정부의 강제적인 조사권한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³⁾, 카르텔에 가담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업(또는 개인)에게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유인(誘因)을 제공하여 카르텔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는 1996년 리니언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최초로 카르텔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한하여 감면을 인정하였고, 감면 정도는 공정위의 재량에 맡기는 등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 후 2001년 4월, 조사 개시 후의 조사협조자에게도 감면을 인정하고, 감면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⁴⁾ 반드시 감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2005년 4월에는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로 상향조정하면서 첫 번째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완전면제하고, 두 번째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를 감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시 2007년 11월에는 2순위자의 감경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공동행위 강요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미국과 같이 '개인의 리니언시'도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2) 미국의 경우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게 형벌이 면제 또는 감경된다.

3) 카르텔을 중대한 형사범죄로 취급하면서 강제적인 수사권을 동원하여 카르텔을 비교적 잘 적발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실제 경쟁당국의 강제집행만으로 적발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 카르텔 건수 중에서 약 13~17%에 불과하다고 한다.

4)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75% 이상, 첫 번째 조사협조자는 50% 이상, 기타의 경우 50% 미만으로 감면범위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온 결과, 시간이 갈수록 카르텔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2005년의 제도 개선 이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던 신고건수가 2005년 이후는 연평균 8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수 대비 리니언시제도 적용사건 수는 35.4%였다. 카르텔에 부과된 과징금액 중 리니언시제도 적용사건의 과징금액은 65.8%에 달하였을 정도로⁵⁾ 리니언시제도는 이제 카르텔 적발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착되었다. 최근 카르텔에 대한 제재수단이 강화되고 리니언시제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리니언시제도는 이제 카르텔을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신청자가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 또는 두 번째로 제공하고 ②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를 해야 하며 ③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첫 번째 신고자의 경우는 그 이외에도 공정위가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첫 번째 자진신고자의 경우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완전 면제되며, 첫 번째 조사협조자의 경우는 시정조치가 감경 또는 면제되고 과징금도 면제된다. 두 번째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는 시정조치 감경과 함께 과징금이 50% 감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언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들로 여러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적손해배상 소송에 의해 리니언시 유인이 억제되지 않도록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리니언시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접근제한 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는 경제적 동일체에 속하는 복수 기업들에게 동일한 순위의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들이다. 경제적 동일체 소속기업들의 리니언시 지위 인정 문제는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기업군의 모(母)회사가 전체 회사를 대표로 또는 전체 회사가 동시에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회사들[모자(母子)회사들 또는 자(子)회사들]에 대해 동일한 리니언시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공동행위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는 동일한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리니언시 관

5) 리니언시제도 시행 11년, 그 성과와 과제(공정거래위원회, 2009.1.)

런 규정은 관련 시장별 단독신청만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 동일체 소속 기업들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순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본 고에서는 현행 규정상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동시에 또는 모회사가 소속회사를 대표하여 리니언시를 신청한 경우, 동일한 시장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순위의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과 EU의 사례를 살펴본 후 현행 법령 상의 관련 규정과 해석론을 살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과 EU의 사례 및 적용 현황

미국과 EU는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는 소속 기업 전체에 대해 관련 시장과 관계없이 동일한 리니언시 순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는 회사 간에는 담합을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나서 EU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1984년 Copperweld 판결⁶⁾ 이후 경제적 동일체 내의 모회사는 관련 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모능력이 없다는 경제적 동일체-이론이 확립되었다. Copperweld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일한 이해관계(Uncity of Interest)를 가지고 그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경제단위(Single Economic Unit)를 이루는 모회사는 관련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그 내부에서의 행위는 관련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모회사 관계는 처음부터 공모능력이 인정될 수 없어 셔먼법(Sherman Act) 제1조의 공모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Copperweld 판결에 의해 정립된 경제적 동일체 이론은 이후 연방항소법원들에 의해 수용되어,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지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10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면 확장·적용되어 왔다. 현재의 미국 판례들은 대체로 80% 이상의 지분 소유관계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동일체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목적 동일성(Uncity of Purpose)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며, 목적 동일성은 회사 간의 지분관계, 자회사의 이사진 구성, 각 회사의 설립 목적, 자회사의 결정권한 보유 유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한다.⁷⁾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원은 다른 회사가 자사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개입하여 중

6) Copperweld Corp. v. Independence Tube Corp., 467 U.S. 752(1984)

7) Total Benefit Servs., Inc. v. Group Ins. Admin., Inc., 1993-1 Trade Cas.(CCH) P. 70, 148(E,D,La). 한 명의 주주가 두 회사 중 한 회사의 지분 100%와 다른 회사 지분 85%를 소유하고, 두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동일한 경우는 두 회사는 담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단시킬 수 있는 정도의 통제권(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두 회사는 경제적으로 동일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Copperweld 판결에서는 모회사간 담합의 공모능력을 부정하였는데,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이와 같이 Copperweld 판결에서 인정된 기준을 자회사 간에도 적용하였다. 즉, 모회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담합이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⁸⁾ 또한,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간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8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간에도 담합을 부정한 경우도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Bell Atlantic Business Systems Services v. Hitachi Data Systems Corp.⁹⁾에서 Hitachi의 100% 자회사인 Hitachi America와 80% 자회사인 Hitachi Data간 담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자회사들인 Hitachi America와 Hitachi Data 간에도 담합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⁰⁾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실체법적으로 경제적 동일체 이론이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바탕으로 절차법적 이슈라고 말할 수 있는 리니언시 지위 인정에 있어서도, 경제적 동일체 내의 모회사 또는 구성사업자 모두가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는 모든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동일한 순위의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리니언시 관련 규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모회사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리니언시 지위 부여에 대하여 명문(明文)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리니언시 공동신청을 금지하는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¹¹⁾ 경쟁당국은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복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또는 모회사가 다른 자회사들을 대표하여 리니언시 신청을 하는 경우,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바탕으로 공동행위에 참여한 계열회사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동일한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쟁당국인 법무부와 자진신고자 간에 합의를 체결하여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중에서 면책이 되는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EU는 Compact 사건에서 “경쟁법상 사업자란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는 다수 사업자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따라서 그 경제적 동일체가 법적으로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8) Directory Sales Management Corp. v. Ohio Bell Tel. Co., 833 F.2d 606, 611(6th Cir. 1987), Advanced Health-Care Services, Inc. v. Radford Community Hosp. 910 F.2d 139 C.A.4(1990), Hood v. Tenneco Texas Life Ins.Co., 739 F.2d 1012, 1015(5th Cir. 1984) 9) 849 F.supp 702 (N.D.Cal., 1994)

10)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와 달리 Copperweld 판결 이전에 나온 판례 중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자회사 간에는 소유자배권을 이유로 서면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었다. Las Vegas Sun, Inc. v. Summa Corp. 610 F.2d 614 C.A.9(1979)

11)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garding the Antitrust Division's Leniency Program and Model Leniency Letters(November 19, 2008)

12) Case 170/83 Hydrotherm v. Compact(1984) ECR 2999, paragraph 11.

마찬가지”라고 판시한¹³⁾ 이래 경제적 동일체 이론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¹³⁾ EU의 경우, 경제적 동일체 이론의 적용과 관련하여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50% 이상의 지분 소유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실질적 지배기준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경제적 동일체 이론이 인정된다.¹⁴⁾

이러한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바탕으로 공동행위에 대한 리니언시 지위 인정에 있어서도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는 복수의 소속회사들에게 동일한 순위의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는 기업집단을 지배 내지는 관리하는 (모)기업이 단독으로 리니언시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모기업의 지배를 받는 회사들은 모두 동순위의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¹⁵⁾ 그러나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는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모기업이 아닌 그 모기업의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지배를 받지 않은 모회사나 다른 계열회사들은 리니언시 신청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리니언시 신청은 경제적 동일체 내에서 다른 계열회사를 지배 내지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업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업이 대표로 리니언시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기업이 공동행위에 가담하거나 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모기업의 지배를 받으면서 공동행위에 연루된 모든 소속기업이 리니언시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정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EU에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여러 사업자로 구성된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기업그룹에 대하여, 그 구성기업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개별회사들은 담합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부정된다는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토대로, 리니언시 지위 인정에 있어서도 경제적 동일체 내의 모기업 단독으로 또는 소속기업이 모두 리니언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복수의 기업들에게 동일한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 및 해석론

13) Bodson 사건(1987년)과 Viho Europe v. Commission(1996년) 등에서 EU 위원회와 법원은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간 및 자회사 상호 간에는 EC Treaty 91(1)조의 합의 또는 동조적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06년 Synthetic Rubber 사건에서도 EU 위원회는 일부 계열회사만 리니언시를 신청하였으나, Dow Group 소속 전체 계열회사에 대해서 2순위의 리니언시를 인정하였다.

14) 따라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경제적 동일체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도 모회사의 지배권이 인정되면 경제적 동일체 이론이 적용된다.

15) The European Commission's 2002 Leniency Notice in practice, Bertus VAN BARLINGEN and Marc BARENNES(I), Directorate-General Competition, Cartels Directorate(Directorate F). 모기업이 그의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를 모두 리니언시 신청서에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열회사들도 동순위의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받는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공동행위 심사지침 IV.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행위' 라는 장을 신설하여 지배-피지배관계에 있는 모회사 간에 담합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경우, 또는 ②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주식 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 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 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러한 사업자들 간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제적 동일체 소속 기업들 간의 담합 성립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가 담합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담합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동 규정은 EU처럼 실질적 지배기준에 따라 경제적 동일체 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가 경제적 동일체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계열회사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⁶⁾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판단기준에 따라 계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모두 경제적 동일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⁷⁾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동일체의 구성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정 보완과 함께 심결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체법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절차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언시 관련 규정에서는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오히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자'에게 감면 지위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 등에대한시정조치등감면제도운영고시」(이하 '리니언시 운영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감면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만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시장에 있는 경제적 동일체 내의 기업들이 복수로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리니언시 순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16) 자본율 기준과 지배력 기준이 있다.

17)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적 집중 억제규정을 통해 계열회사 판단기준이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는데,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기업집단내 계열회사는 경제적 동일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주장은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다시 공동행위를 통해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4월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이전에 공동신청을 허용하던 것을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① 공동행위 심사지침이 경제적 단일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에 공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행위에 가담한 동일체내 사업자들은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들을 합쳐 법률상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② 실체법적으로 독립적 법률주체로 담합행위에 가담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절차법적으로도 피심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③ 리니언시 고시에서 공동감면신청을 금지하는 본래의 취지는, 담합에 가담한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경제적 동일체내 기업들에게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지 말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니언시 관련 규정상 '자진신고자'는 경제적 동일체 내의 개별회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자'를 단독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일체 그룹 단위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공동행위에 대한 리니언시 지위 인정과 관련해서 경제적 동일체 소속기업그룹 전체를 하나의 법률단위로 보고, 소속기업은 독립적인 법률단위가 아닌 구성요소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실체법적으로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인정한 이상 절차법적으로도 이를 인정되는 방향으로 리니언시 고시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법령의 문리적 해석보다는 합목적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실체법적으로는 경제적 동일체를 인정하면서 공동행위 리니언시 관련 규정에서는 경제적 동일체 이론과 배치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향후 보완 방향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동시에 리니언시 신청을 하는 경우, 소속기업들이 동일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기업들 간에는 담합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순위의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리니언시제도의 효용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근래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살펴보면 세계 각지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관련하고 있는데, 각 개별 사업자 별로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할 경우는 가장 먼저 리니언시를 신청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관련 시장별로 소속기업들 중 2개 기업(1순위 1개, 2순위 1개)만이 리니언시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그룹 내의 동일시장에 있는 다른 계열회사들은 리니언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다수의 계열회사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 기업 그룹이 감면신청을 할 경우는 1, 2순위가 모두 소진되어 다른 후순위 신고자가 자진신고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이는 리니언시 신청 유인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관련 시장 별로 동일그룹 내에 2개 기업만이 1, 2순위의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 받고 다른 계열회사들은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는 리니언시 지위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경쟁당국의 조사에 협조할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경쟁당국으로서도 조사에 있어서 큰 난항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집행된 카르텔 사건 중에서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된 카르텔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다. 중요 사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국제카르텔의 경우는 자진신고를 통한 사건 인지가 대부분이며, 경제적 동일체 내의 소속회사들에게 동일한 순위의 리니언시 지위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는 국제카르텔 자진신고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는 모든 경쟁당국이 거의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쟁당국은 경제적 동일체에 속하는 기업들에게 모두 동일 순위의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그렇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쟁당국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경제적 동일체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동시에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는 소속기업 모두에게 동일 순위의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EU의 경우처럼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리니언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모기업이 피지배기업들을 대표하여 리니언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업들 모두에게 동일한 리니언시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리니언시 신청단계에서 카르텔 가담기업을 모두 정확하게 조사하여 리니언시를 신청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정조치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동일한 리니언시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요구되는데, 시행령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추진이 되기 전이라도 법령 해석을 통하여 경제적 동일체 소속기업들에게 동일한 리니언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